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52280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관
변 론 종 결 2023. 5. 23.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4.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8.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자금대출 220,000,000원의 90%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B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보증약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B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제2호), 원고가 보증한 채권자로부터 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제8호), 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제10호) 등에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다.

나. 피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0. 1. 15. 284,13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명령(2020차전106255)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이에 기해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0. 4. 2. 강제경매개시결정(C)을 받았다. B는 2020. 4. 21.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2020. 4. 24.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2020. 5. 4.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의 신청에 의해 2021.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C)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해 277,543,057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22.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자 피고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2022카단810470호).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22. 6. 22. 위 강제경매로 인해 매각되어 2022. 6. 29. 경락인인 E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4. 2. B에 대한 198,000,000원의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B는 채무초과 상태인 데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277,543,057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배당금출급채권 즉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이 늦어도 2020년 5월경인데, 원고는 2022.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7. 26. B에게 보증사고(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무렵 B 소유 부동산에 채권보전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가격자문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자문일이 2021. 7. 26.이었던 사실, 원고가 2021. 8.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21. 8. 12. 가압류 결정(2021카단871호)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21. 8. 4. 위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사건(수원지방법원 C)의 배당요구종기일이 2021. 9. 7.이므로 조속히

부동산 가압류가 필요하며 경합채권자들도 다수 있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21. 7. 26. B에게 보증사고(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가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가격자문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3호증의 기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2021. 8. 4.경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2. 7. 2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가압류신청 시점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는 B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원고가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 수원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F)이 내려졌던바, 2020. 4. 2. 원고의 B에 대한 198,000,000원(220,000,000원의 90%)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가사 B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2021. 7. 26.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 강제경매개시결정뿐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부터 2개월 내인 2020. 4. 23. 주식회사 G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 2020. 5. 4.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2020. 6. 4. 주식회사 H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던바, 이는 모두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사전구상금 발생 사유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갑 제5, 6,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그 가액이 911,846,560원이었던 사실, B의 소극재산으로는 피고가 다투는 I카드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J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98,000,000원, K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623,000,000원, L에 대한 리스료 채무 155,509,836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 199,920,000원, 피고에 대한 광고제작대금 채무 284,134,400원,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402,200,000원이 있어서 그 합계가 1,762,764,236원에 달하므로,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K은행의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K은행의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816,000,000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911,846,560원)에 근접하였고 피고의 채권이 284,134,400원이었으므로 이를 더하면 B가 채무초과 상태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경위 즉,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0. 4.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였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주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대 656㎡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도로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14.58㎡

2층 99.4㎡ 끝,

(별지 목록)

채권의 표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 277,543,057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 끝.

